







보도참고자료

미래창조 금융

•따뜻한 금융

─ ・튼튼한 금융

위컨외

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배포 2017.4.20(목)

책 임 자

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영채(02-2100-1730)

담 당 자

송 희 경 사무관 (02-2100-1721)

제 목 :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

- □ 금융정보분석원장(정완규)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(울산 소재)에 대해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과태료(500만원)를 부과하였음(4.19)
- 同 금고를 검사한 **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** 에 따른 조치로, 새마을금고 등 **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**임
 - * FIU는 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(특금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)
- * (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) 고객확인의무,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은행에 19억 9,000만원('15.4월), ❷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저축은행에 5억 9,00만원('16.6월)을 부과 등
- □ 금융정보분석원은 **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**될 수 있도록 **금융**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-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**실소유자 확인 등**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,
-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, 위험평가시스템 구축· 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
- ※ FIU 보도자료 ("지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". '17.120 배포) 참조



